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90

발의연월일: 2021. 3. 15.

발 의 자 : 이종성·김영식·김용판

이종배・윤희숙・정운천

김미애 · 김형동 · 서일준

박대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복지관,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종사자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「병역법」에 따라 노인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업무 특성상 노인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지관,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를 위한 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하려는 것임.

다만,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제도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도록 하여 신고에 대한 공익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39조의6제2항제5호 및 제61조의2제2항제2 호 단서 신설). 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6제2항제5호 중 "종사자"를 "종사자(사회복지관,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에서 복무하는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)"로 한다.

제61조의2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39조의6제2항제5호 중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| 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| |
| 절차 등) ① (생 략) | 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 | |
|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| ② | |
|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| | |
|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| | |
| 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| | |
|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| | |
| 신고하여야 한다. | | |
| 1. ~ 4. (생 략)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| |
| 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 | 5 | |
| 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| | |
|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 | | |
| 회복지관, 부랑인 및 노숙인 | | |
|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| <u>중</u> | |
| <u>종사자</u> | <u>사자(사회복지관, 부랑인 및</u> | |
| |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에서 | |
| | 복무하는 「병역법」 제2조제 | |
| | 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 | |
| | 원을 포함한다) | |
| 6. ~ 15. (생 략) | 6. ~ 15. (현행과 같음) | |
| ③ ~ ⑥ (생 략) | ③ ~ ⑥ (현행과 같음) | |
| 제61조의2(과태료) | 제61조의2(과태료) | |
| ① (생 략) | ① (현행과 같음) | |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(생략)
- 2.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<단서 신설>

- 3. (생략)
- ③ ~ ⑥ (생 략)

| 2 | |
|---|------|
| | |
| | |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-----

--- <u>다만</u>, 제39조의6제2항제5 호 중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은 제외한다.

- 3. (현행과 같음)
- ③ ~ ⑥ (현행과 같음)